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,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여 현장의 제도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 절차 (안 제3조 개정)

기술지주회사를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첨부하여야 하는 기술지주회사 설립·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에 관한 내용을 개정

나. 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절차 (안 제3조의2 신설)

법 제36조의2 개정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분할·합병 등에 따른 변경인가 제도가 도입되어, 변경사항 발생 시 교육부장관에게 인가를 얻기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

다. 변경인가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(안 제4조 개정)

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한 자는 그 결과에 대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 가능

라. 계약정원, 계약학과 용어 정의 개편 (안 제5조 개정)

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

마.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 신청 서식 개정 및 변경인가 관련 서식 신설 (별지 제3호 서식 개정, 제3호의2 및 제4호의2·제5호의2 서식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추진 예정

3) 행정규제 : 협의 예정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포함된”을 “포함된 영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”를 “시설 등 설립·운영계획에 관한 사항)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 1부

4. 그 밖에 설립인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의 절차) ①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

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기술지주회사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변경·운영계획서 1부가.
가. 변경목적
나. 출자내역 및 비율 등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
다. 사업계획서(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될 인력 및 시설 등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)
2. 임원의 이력서 1부
3.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 1부
4.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 1부
5. 그 밖에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서류를 검토하여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교육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변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⑤ 교육부장관이 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을 인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 2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, 인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② 제3조의2제4항의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제5조의 제목 “(계약학과 등의 신고절차)”를 “(계약정원의 신고절차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계약학과등 설치·운영계획”을 “계약정원 편성·운영계획”으로, “계약학과등 폐지계획”을 “계약정원 폐지계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계약학과 등”을 “계약정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설치·운영계획”을 “편성·운영계획”으로 한다.

1. 계약정원의 편성·운영(폐지)계획서 1부

별지 제3호서식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 1부

4. 기타 증빙서류 각 1부

별지 제3호의2서식,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을 각각 별

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3호서식]

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				처리기간 30일	
신청인	산학협력단명			사업자등록번호	
				법인등록번호	
	대표자			E-mail	
	대학명				
	주 소	본교			전화 :
					팩스 :
		분교			전화 :
팩스 :					
출자기관 및 기술지주회사 개요					
출자자	성명(기관명)		출자금액(지분)	출자자산(항목)	
	합계		100.0		
기술지주회사	기업명				
주소	본사				
	지사				
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날인) 교육부장관 귀하					
첨부서류					수수료
1. 기술지주회사 설립계획서 1부					없음
2. 임원의 이력서 1부					
3.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 1부					
4. 기타 증빙서류 각 1부					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
[별지 제3호의2서식]

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				처리기간		
				30일		
신청인	기술지주회사명			사업자등록번호		
				법인등록번호		
	대표자			E-mail		
	산학협력단명					
	주 소	본교			전화 :	
					팩스 :	
		분교			전화 :	
팩스 :						
출자기관 및 기술지주회사 개요						
출자자	성명(기관명)		출자금액(지분)	출자자산(항목)		
	합계		100.0			
기술지주회사	기업명					
	주소	본사				
		지사				
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날인) 교육부장관 귀하						
첨부서류 1. 기술지주회사 변경·운영계획서 1부 2. 임원의 이력서 1부 3.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 1부 4.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 및 기타 증빙서류 각 1부					수수료	
					없음	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
제 호			
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서			
기 업 명			사업자등록번호
			법인등록번호
대 표 자			
주 소	본사		
	지사		
출자기관	기관명	출자금액(지분)	출자자산(항목)
	합계	(100.0)	
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을 인가합니다. 년 월 일 교 육 부 장 관 (인)			

210mm×297mm(보존용지(1종) 120g/m²)

[별지 제5호의2서식]

이의신청서				
기술 지주 회사	기 업 명			대 표 자
	법인등록번호			사업자등록번호
	주소	본사	(전화 :) (팩스 :)	
		지사	(전화 :) (팩스 :)	
신청 요지				
신청 내용				
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의제2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신청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날인)				
교육부장관 귀하				
※첨부서류 : 그 밖에 증명서류				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 m²(재활용품))

[별첨] 참여 기관 정보

(뒤쪽)

연번	기관명	기관 유형	산업 분류	계약기간	상시 근로자 수 (명)	기관 소재지 (주소)
...						
...						

작성방법

※ 아래 기관 유형에 따라 ④, ⑤, ⑥에 해당할 경우에는 작성 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만 선택하여 작성합니다.

1. 기관 유형

- 구분은 ① 중소기업, ② 중견기업, ③ 대기업, ④ 국가(군부대 포함), ⑤ 지방자치단체, ⑥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하되, ① ~ ③의 구분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. 이 경우 ⑥ 기타로 작성할 때에는 세부 내용을 반드시 별도로 작성합니다.

구분	기준
① 중소기업	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② 중견기업	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
③ 대기업	①, ② 외의 기업

2. 산업 분류

-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

3. 상시근로자 수

- 「근로기준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 수를 작성합니다.

계약정원 폐지계획 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신고유형 및 산업교육 기관명	계약형태 [] 단독계약, [] 공동계약, [] 제3자계약(사업자단체와 계약, 국가·지자체 등 재정지원 시)	
	산업교육기관명	산업교육기관 소재지(주소)
	계약정원명 * 계약학과·학부명 또는 계약정원의 경우 계약정원을 두는 일반학과·학부명	- 참여 기관 수 : 개 - 참여 기관 정보 :
	유형 : i) 기설치 학과·학부 활용 [] 채용조건형 ii) 새로운 학과·학부(계약학과) 설치 [] 재교육형 [] 채용조건형	
신고 내용	계약정원 운영 기간	
	- 편성일 : - 폐지 예정일 : - 운영 기간 : 00년 00월	
	학생 현황	
	- 입학생 총수 : 운영기간 동안 입학한 학생 전체 수 - 졸업생 총수 : 운영기간 동안 졸업한 학생 전체 수 - 폐지일 기준 재학생 및 재적생 수 : 재학생 00명, 재적생 00명(총 00명) 또는 해당없음	
	폐지 사유	
	계약기간 만료, 산업체 도산 등 사유 적시	

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정원의 폐지계획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기관장 직인)

교육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서류명		수수료 없 음
	1. 계약정원의 폐지계획서 1부		
	2. 학교규칙 개정안 1부		
	3. 계약정원의 운영세칙안(별도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) 1부		

210mm×297mm(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의 절차) ① (생략)	제3조(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의 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설립계획서 1부	1. ----- 포함된 영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-----
가.·나. (생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다. 사업계획서(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	다. ----- 시설 등 설립·운영계획에 관한 사항)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3. <u>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 1부</u>
<신설>	4. <u>그 밖에 설립인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</u>
<신설>	③ <u>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</u>

③ ~ ⑤ (생략)

<신설>

④ ~ ⑥ (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)

제3조의2(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의 절차) ①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기술지주회사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변경・운영계획서 1부

가. 변경목적

나. 출자내역 및 비율 등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

다. 사업계획서(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될 인력 및 시설 등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)

2. 임원의 이력서 1부

3.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 1부

4.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 1

부

5. 그 밖에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서류를 검토하여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교육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변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⑤ 교육부장관이 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을 인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, 인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

제4조(이의신청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제5조(계약학과 등의 신고절차) ①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설치·운영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.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1. <u>계약학과 등의 설치·운영(폐지)계획서 1부</u> 2. (생략) 3. <u>계약학과 등의 운영세칙안</u>	<u>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u> 제4조(이의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3조의2제4항의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③ ----- 제1항 및 제2항----- ----- -----. 제5조(계약정원의 신고절차) ① ----- 계약 정원 편성·운영계획 ----- ----- ----- 계약 정원 폐지계획 ----- -----. ② ----- ----- -----. 1. <u>계약정원의 편성·운영(폐지)계획서 1부</u> 2. (현행과 같음) 3. <u>계약정원</u>-----
---	---

(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) 1부	----- --
4. 계약서안(<u>설치 · 운영계획</u> 신 고의 경우에 한한다) 1부	4. ----- <u>편성 · 운영계획</u> -- -----